

## 2025년도 결혼장려금 지원 추진계획

### □ 목적

-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
-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시켜 출산 유도 인구증대

### □ 지원근거

-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

### □ 추진상황

- 2019년부터 장려금지급 시책추진에 따라 총 171쌍(건) 631백만원 혜택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합계	33건	80건	89건	68건	60건	<b>71건</b>	401건
<b>1회차</b> (혼인신고 후)	33건	48건	16건	18건	29건	<b>27건</b>	171건
<b>2회차</b> (1회차 지급 후 1년)	-	32건 (이혼1)	43건 (전출5)	14건 (관외거주2)	17건 (관외거주1)	<b>28건</b>	134건
<b>3회차</b> (1회차 지급 후 2년)	-	-	30건 (관외거주2)	36건 (관외거주1혼)	14건	<b>16건</b>	96건
지급액	33백만원	112백만원	162백만원	118백만원	91백만원	<b>115백만원</b>	631백만원

### □ 추진계획

- 사업비 : 176백만원(군비)
  - 산출기초 : 연1회 2백만원 × 88명(신규 30, 2회차 30, 3회차 28)
- 지원기준
  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- ※ 배우자가 이주여성인 경우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- 지원내용 :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백만원(4년간 5회 분할 지급)

구분	계	혼인신고 후 (1회)	1년 후 (2회)	2년 후 (3회)	3년 후 (4회)	4년 후 (5회)	비고
금액(천원)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'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

- 지급방법 : 순창사랑상품권(모바일)

※ '23년 ~ '24년 신청자의 잔여 지원금은 현금 지급 예정(계좌이체)
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
-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
-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,
-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

### 【유의사항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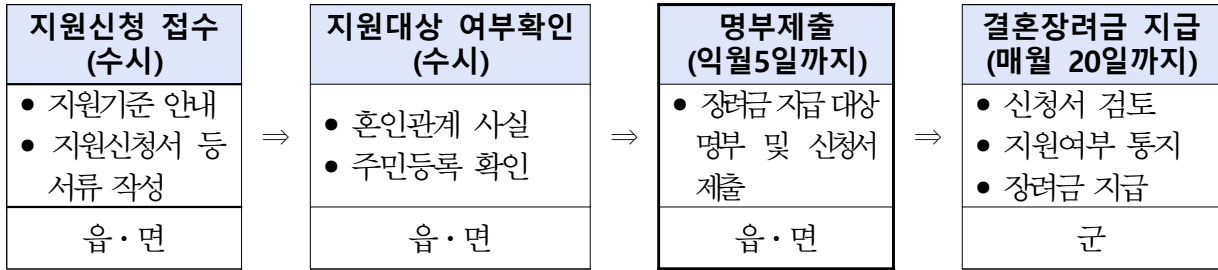
-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
-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 요건(19세~49세) 충족 시 지급 가능  
예) 남편 52세, 아내 49세 인 경우 지원가능
-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
-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는 지원 불가
-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시 제3자의 지원신청 가능. 대상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(본인서명 사실확인서) 첨부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」 참고

### ○ 신청방법

- 접수처 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,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
- 제출서류
  -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  -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  -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.

※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

## ○ 지원절차



## ○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

- (지원중단)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
- (환수조치)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,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
## □ 읍면 협조사항

- 전입 및 혼인신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자격요건 등을 파악해서 안내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담당자가 추진
-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적극 홍보
  - 전입 및 혼인신고 접수 시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
  -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권고에 따라 2025년 신청자부터는 장려금 지급방법이 ‘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’ 지급됨을 안내
  - ※ “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” 미사용시 지급불가
- 당월 접수 사항은 익월 5일까지 인구정책과로 일괄 송부(명부 및 신청서)
- 최초 결혼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시 지급된 장려금 전액 환수(이행서약서 징구)함을 필히 안내 바람
  - ※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작성 시 회색부분은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
- 2회 이후 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주소 및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을 사전 안내
- 장려금 최초 신청한 날부터 4년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격(주민등록 및 거주, 혼인관계 등) 여부 확인하여 군에 통보



##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

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창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「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며, 최초 결혼장려금을 신청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결혼장려금 전액 환수 조치를 인지하고, 이에 받은 최초 결혼장려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서약자 성명 : (서명)  
생년월일 :  
주소 :

순창군수 귀하